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68호 2019. 10. 2(수)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7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총무기획팀”을 “기획조정팀”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총무기획팀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인사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7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박물관 및 녹청자”를 “녹청자”로, “인사”를 “인사 및 박물관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 중 “사무원, 안내원”을 “선임사무원, 사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사 무 원”을 “선임사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안 내”를 “사 무”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

구분	선발시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관장	서류 전형	면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의 도자기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박물관 및 사료관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지역 향토문화 연구 및 서구 문화발전에 5년 이상 기여한 사람</li> </ul>
학예 연구 실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 1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ul>
학예 연구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자기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li> <li>○ 도자기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자</li> <li>○ 미술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학예사자격증 소지자</li> </ul>
사무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사람</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 도자기 관련학과 전문학위 취득자 또는 도자기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li> </ul>

[별표 2]

직원의 사무(제13조 관련)

구 분	사 무 명
관 장	○ 녹청자 박물관 업무 총괄
학예 연구 실장	○ 학예업무 총괄 ○ 전시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 학술자료의 조사 및 연구 ○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학예 연구사	○ 도예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시실 운영 계획 수립 ○ 가스 가마 및 전통 가마 관리 ○ 도예 정규 교육과정 운영 ○ 어린이날 도자기 무료체험 행사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방학 도자기 특강 운영 ○ 가마소성 ○ 소방계획 수립 및 방화관리, 안전관리
사 무 원	○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안, 청소, 환경관리 ○ 박물관 물품관리 ○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금 납부 및 실적관리 ○ 박물관 시설물 종합관리 ○ 녹청자박물관 안내 및 이용고객 관리에 관한사항 ○ 교육 프로그램 업무지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1598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출산축하용품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외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축하금 환수에 관한 규정 및 일부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2. 주요내용

- “차상위계층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으로 하여 “저소득복지대상자 지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안 제2조제3호)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

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에게 출산축하용품비를 지급하는 사항

- “차상위계층지원”에 관한 규정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으로 정비(안 제4조)
- 허위사실 신고 등으로 지원 받은 축하금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에 출산축하용품비, 산후조리비를 추가하여 정비 (안 제12조)
- 조례상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별지 제1호서식 지원내용란 “차상위계층 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로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은 2019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되, 개정조례공포일 이전 출산한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 불구하고, 조례 공포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토록 함. (안 부칙 제2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가정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 560-5736 / FAX 560-274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출산축하용품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외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축하금 환수에 관한 규정 및 일부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으로 하여 “저소득복지대상자 지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안 제2조제3호)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에게 출산축하용품비를 지급하는 사항  
나.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으로 정비 (안 제4조)

다. 허위사실 신고 등으로 지원 받은 축하금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에 출산 축하용품비, 산후조리비를 추가하여 정비 (안 제12조)

라. 조례상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마. 별지 제1호서식 지원내용란 “차상위계층 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로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바.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은 2019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되,개정조례 공포일 이전 출산한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 불구하고,

조례 공포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토록 함. (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 (100명 / 30,000천원)

1) 2019년도(2019.7.1.~ 12.31.) : 30명 / 9,000천원

2) 2020년도 : 70명 / 21,000천원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수용” 협의완료 ( 2019. 9. 10.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9. 10월 실시 예정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 원안동의

##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이란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을 포함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에게 출산축하용품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차상위계층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 복지대상자”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내지 제5조의”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 중 “축하금 지원 신청대장”을 “출산·입양축하금 등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축하금”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하금”을 “제1항에 따라 축하금 등”으로, “지원 대장”을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내용란 중 “차상위계층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 축하용품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출산한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차상위 계층 지원</u>”이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각 개별법상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에게 출산축하용품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말한다.</u></p> <p>4. ~ 9. (생략)</p> <p>제3조(축하금) ① 구청장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구청장이 결정하여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4조(<u>차상위계층지원</u>) 구청장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계속 양육하는 <u>차상위계층</u>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출산축하용품비로 지원할</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u>”이란 <u>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에게 출산축하용품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말한다.</u></p> <p>4.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축하금) ① ----- ----- ----- <u>범위</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u>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u>) ----- ----- <u>저소득 복지대상자</u>----- -----</p>

수 있다.

제5조(산후조리비지원) 구청장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거나, 입양·양육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1. 2. (생략)

②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아이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사본 1부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산후조리비지원) -----

-----  
----- 범위 -----  
-----  
-----.

제6조(지원대상)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 한 차례만 -----.

제8조(지원신청)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  
-----  
-----  
-----  
-----.

②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사본 1부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지원의 중단등) 구청장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1. 2. (생략)

제11조(대장 등 비치) 동장과 구청장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  
-----  
-----  
-----  
-----  
-----.

제9조(지원절차)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  
-----

② -----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의 중단등) -----  
----- 각호-----  
-----  
-----.

- 1. 2. (현행과 같음)

제11조(대장 등 비치) -----

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축하금 지원 신청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사실 신고 등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축하금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3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1. ~ 4. (생략)

----- 출산·입양축  
하금 등 지급대장-----  
-.

제12조(환수조치) ① -----  
-----  
--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하금 등-----  
-----.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 등  
지급대장-----  
-----.

제13조(저출산 대책 지원) -----  
-----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자녀를 출산하여 계속 양육하는 저소득 복지대상자에게 출생아(2019년 7월 1일부터) 1인당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 (조례안 제4조 및 부칙)

###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단위:명)

출생연도 보장구분	2014년생	2015년생	2016년생	2017년생	2018년생
합 계	202	179	131	115	5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7	76	61	54	39
차상위계층	115	103	70	61	20

#### 나. 추계 결과

○ 인구 증가에 따른 저소득복지대상자 출생아 수 소폭 증가 예상 (단위:명)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합계
출생아 수	60	70	75	80	85	90	460

####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부담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천원)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30,000	22,500	24,000	25,500	27,000	129,000

\* 2020년도 : 2019년도 6개월분(7월~12월) 포함

###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가정보육과장 연미숙

#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